

## 의안 검토보고

1. 발의 또는 제출자 : 대전광역시장
2. 건 명 : 대전광역시고문번호사조례중개정조례안
3. 안 건 요 지 : 별 첨

위 의안에 대한 검토사항을 별첨과 같이 보고합니다.

1995년 12월 일

내 무 위 원 회

전 문 위 원 조 준



대전광역시고문변호사조례중개정조례안

# 검 토 보 고 서

1995년 12월 일

내무위원회 전문위원

대전광역시 고문변호사 조례 중 개정 조례안

## 검 토 보 고

본 안건은 1995.11.24 대전광역시시장으로부터 제출되어 1995.11.25 당 위원회에 회부되었음.

### 1. 제안이유

- 행정의 적법성, 공정성을 기하고 우리시와 관련된 소송업무등 법률사안을 효율적으로 처리하기 위하여 1989. 1. 1 일 관련조례를 제정·운영하고 있음.
- 지방자치시대에 날로 증가하는 행정수요에 능동적으로 대처하고 각종 행정행위에 대한 사전 자문을 통하여 시민의 권익을 보호하여 줌으로써 행정의 신뢰성 제고는 물론 시민을 위한 행정을 수행하기 위해 3인의 고문변호사를 위촉하여 행정관련 법률사안 자문 및 소송사건을 선임, 수행하고 있으나
- 변호사 수임료 및 승소사례금이 조례제정 당시 책정된 금액으로 대법원 규칙 및 타 시·도에 비해 너무 낮은 실정이므로 적극적인 소송수임 및 수행을 위하여 고문변호사 수임료 및 승소사례금을 현실에 맞게 상향 조정하려는 것임.

### 2. 주요골자

- 민사·행정소송에 따른 고문변호사 수임료 및 승소사례금을 상향 조정함. (안 제6조)

### 3. 검토의견

- 동 개정조례안은 현행 소송수행에 따른 고문변호사의 소송수임료 및 승소사례금이 89. 1. 1 조례제정 당시 책정된 금액을 지금까지

적용해 오고 있어, 90. 8. 21 제정된 대법원규칙 및 동 개정조례안 첨부자료의 서울 및 4대 광역시 지급기준 비교표에서 나타난 바와

같이 대전시가 너무 낮은 실정인바, 현재 위촉된 3인의 고문변호사수임료 및 승소사례금을 대법원 규칙 및 타 광역시 수준에 부합되도록 상향 조정하는 내용임.

- 주요개정 내용으로는

- 안 제6조 제1항(별표)의 소송비용 지급기준중 신청 사건에서 착수금을

- 단순 및 본안 관련 신청은 5만원 → 10만원으로
- 변론있는 신청은 10만원 → 20만원으로

- 본안소송의 경우 소송물가액이

- 5백만원 미만인 사건은 16만원 → 25만원으로
- 5천만원 미만인 사건은 80만원 → 120만원으로
- 1억원이상인 사건은 200만원 → 250만원으로

착수금을 상향 조정하는등 대법원 규칙으로 정한 변호사 보수의 소송비용 범위내에서 타 광역시와의 형평을 고려해서 조정되었음.

- 따라서 본 안건은 그간에도 소송수임료등이 낮게 책정되어 고문변호사 위촉 및 소송수행에 많은 어려움이 있었던 점을 감안하면 다소 낮은감이 있지만 앞으로 소송수행에 다소 원활을 기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됨.